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소방청장 추가>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64호, 제2211665호)

2025.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Ⅰ. 제안경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Ⅱ. 검토의견 ·····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5

2. 검토의견 ····· 7

※ 참고자료 ····· 11

Ⅰ.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임호선・서미화・김영환・소병훈・손 솔
전종덕・이성윤・송옥주・서왕진・한창민・황운하
정혜경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 의안번호 : 1166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

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임호선・서미화・소병훈・손 솔・전종덕
이성윤・송옥주・서왕진・김영환・한창민・황운하
정혜경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 의안번호 : 1166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소방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 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1. ----------경찰청장, 소방청장----------

현 행	개 정 안
2.·3. (생 략) ③ ~ ⑥ (생 략)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생 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u>경찰청장</u>·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u>경찰청장·소방청장</u>----------.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방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소방정책 수립 및 조정,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 제도 운영, 화재진압 및 화재조사 기술개발, 긴급구조 역량 강화 및 구조·구급정책 기획·조정, 소방산업 진흥 및 국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 소방장비 보급 및 항공구조구급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을 겸함.[2]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청의 장으로서 직무 중요도 및 책임성이 크고 다양화·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소방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후보자의 자질,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방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소방청장의 위상·임무·권한 및 책임과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3]

첫째, 현행법상 행정각부에 설치된 외청 중 ①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검찰청, ③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에 대해서만 그 기관장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는 점을 참고할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2) 현행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청장의 임기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의 의결 전제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에서는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필요가 있음.

[표-3] 외청 기관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여부

구 분	외청 기관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
기획재정부	**국세청장**	○
	관세청장	×
	조달청장	×
	통계청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
외교부	재외동포청장	×
법무부	**검찰총장**	○
국방부	병무청장	×
	방위사업청장	×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
	소방청장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	×
환경부	기상청장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새만금개발청장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둘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4]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청문대

4)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두어야 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인사권한 등이 현행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청문 과정이 정치적 정쟁으로 이어지거나 당론 등이 후보자의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난대응 역량 약화, 소방정책의 일관성 저해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17

참고자료

인사청문대상 확대 경과

도입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